



「인권과 성평등 교육」 이수 의무에 관한 규정

1. 학부생 (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)

- 「교육과정 편성·운영 시행세칙」 제43조(졸업요건)
- 수업연한 내 학년별 1회, 재학 중 최대 4회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을 충족함
(편입·재입학생 포함)

2. 일반 대학원생 (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)

- 「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」 제43조(석사학위 논문 제출자격), 제44조(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자격)에 따라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 전에 이수해야 함

3. 특수·전문대학원생

1) 미디어대학원 : 일반대학원 규정과 동일

2) 생명환경과학대학원

- 「생명환경과학대학원 시행세칙」 제13조(학위청구 및 연구보고서 제출자격) 제4호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

3) 법학전문대학원 (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)

- 「법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」 제41조(수료학점)에 따라, 재학 중 1회 이상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

4) 국제대학원 (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)

- 「국제대학원 시행세칙」 제38조(인권과 성평등교육 및 연구윤리교육)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

5) 교육대학원 (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)

- 「교육대학원 시행세칙」 제19조(학위청구 자격)에 따라 3학기 이전 인권과 성평등 교육 1회 수강 의무화

6) 법무대학원

- 「법무대학원 시행세칙」 제32조(학위취득을 위한 전제요건)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함

※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특수·전문대학원의 경우에도 별도 기준을 정해 따르기도 하므로 반드시 각 대학원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학위청구 논문제출과 졸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



4. 전임교원

- 「교원인사규정」 제64조(승진승급 결격사유) 제2항 : 교육 미이수시 승진 및 승급 결격사유에 해당함.
- 조교수 및 부교수는 승진, 승급예정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 1회 이수하여야 함
- 교수는 직전 연도 2년간 2회 이수하여야 함.

5. 비전임 교원

- 교원인사규정 내 비전임교원 임용계약서 제3조(권리와 의무)에 따라, 임용 시작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함.

6. 강사

- 「강사 재임용 평가에 대한 지침」 제3조 (재임용 심사 신청) : 임용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수하여야 함.